

아베정권의 정치이념지향성과 ‘적극적평화주의’



조 정 남 (한국민족연구원)
<cncho2@gmail.com>



1. 서

이 글에서는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가 그동안 표방하고 있는 정책노선의 이념적인 구조를 살피고, 더 나아가 이들 이념구조의 함의와 그 지향성을 분석해 보려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현재 아베정권의 정책노선이 전후 일본정치의 이념노선 변화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이해하고, 또 그것이 가지는 현재적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려한다.

현재의 일본정치가 펼치고 있는 대내외정책은 전례없던 편향성과 과격성을 나태내 보이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관찰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이같은 좌충우돌식의 정치행태의 본질을 이

해하기 위해서는 그들 제반정책들이 가지는 이데올로기적 지향성과 이들의 내재적인 의미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본정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책적 선택들이 하나같이 '잘못된 과거'를 '정상적인 것으로 복원시키는 노력이라는 이른바 '정상화' 논리로 합리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합리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초조해 하는 부분이 바로 그들 정책들이 가지는 '논리적 정당성의 문제 즉 '이데올로기적인 적실성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2. 아베총리의 정치이념구조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총리는 2006년에 이어 2012년 두 번째로 총리에 취임한 이후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후체제 극복'과 이를 통한 '새로운 국가'¹⁾ 건설을 강조하면서 모든 대내외정책들을 이를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베총리가 말하는 '새로운 국가'만들기는 그동안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曽根康弘) 전 총리, 오자와 이찌로(小沢一郎) 전 민주당 대표 등이 내세워 왔던 '전후체제를 극복하고 '새롭고', '건강한 일본'을 구축키 위해 제시되어왔던 개혁논리에 대한 아베 식 대안논리로, 구체적으로 그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국가'는 '강한 일본'이며 이 '강한 일본'은 '적극적평화주의'만을 통해서만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강한 일본' 건설을 궁극적인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며 이를 위한 실천목표로 '적극적자유주의'를 제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새로운 일본' 만들기를 위한 아베식의 논리구조를 특정 정치이념구도를 최고목표라고 할 수 있는 '이상목표'(utopian goal), 현실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실천목표'(practical goal) 그리고 이들 목표들을 달성키 위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일 수 있는 '실천전략'(practical strategy) 등으로 구성된 단순화한 분석을 위한 개념 틀²⁾로 분석해 보면, 아베의 정치이념구도의 최고목표인 이상목표는 '강한 일본'의 구축이며, 이러한 이상목표의 달성을 위한 실천목표로는 '적극적 평화주의'가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데올로기 분석을 위한 개념사다리의 맨 아래쪽의 실천전략(practical tactics)의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아베정권에서 성립되었거나 그 행사를 준비 중에 있는 헌법개정, 집단적자위권의 행사, 비밀보호법 제정, 국가안보전략 수립 등이라고 볼 수 있다.

1) 이는 아베총리가 2006년에 간행한 『美しい国へ』증보판으로, 2013년에 펴낸 '아름다운 나라로(『新しい国へ』)에서 그 개념과 내용이 체계화되어 있다.

2) 특정 정치이념의 분석을 위한 분석적 개념틀에 대해서는 조정남, '현대일본의 정치이념', (교양사회, 2009), pp.14-16을 참조

■ ‘전후청산을 통한 ‘강한 일본’ 건설의 논리

앞에서 살핀 전후극복을 통하여 ‘새로운 일본’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아베총리의 ‘새로운 국가’에 대한 이념적 구상은 전후 일본의 정치과정에서 오래전부터 가다듬어져왔던 ‘전후총결산’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역사적으로 일본의 정치과정에서 ‘패전일본’을 청산하고 ‘전후일본’을 새롭게 만들어내려는 ‘새나라 만들기’ 즉 ‘正常化’를 위한 노력은 ‘戰後總決算’의 정치적 목표를 맨 먼저 분명히 한 나가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전 총리에서 시작, 그 후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의 ‘普通國家論’에서 이론적인 체계성을 갖추었다. 일본정치에서 ‘戰後’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질서를 구축하는 전후총결산정책의 궁극적인 이상목표로 가장 분명하게 등장한 것이 보통국가론이며, 이는 일본에서의 ‘전후’의 완전한 극복은 패전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미 점령군 사령부에 의해 타의적으로 만들어 졌던 무장권, 교전권 등 온전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부정된 빈쪽자리 국가 즉 ‘片肺國家’에서 벗어나 정상성을 회복한 ‘普通國家’의 건설에 있다는 것이었다.

‘普通國家’란 오자와 이찌로(小沢一郎)가 그의 책 『日本改造計劃』(講談社, 1993)에서 새로운 일본의 국가목표로 제시된 이래 지속적으로 일본 전후총결산의 최종적인 이상목표로 자리잡아왔다. 오자와가 말하는 보통국가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일본이 전후의 고립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무역과 안전보장, 정치, 경제의 각 분야에서의 협조적인 국제질서가 확립된 ‘국제국가’로의 전환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국가’와 ‘보통국가’는 오자와에 있어서는 동전의 양면과도, 또 서로 분리할 수 없는 인과관계로도 설명될 수 있다.

〈‘보통국가’란 무엇인가.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하나는, 국제사회에서 당연시 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스스로의 책임이래 행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 당연하게 행한다. 일본 국내에 서밖에 통용되지 않는 것을 내세우거나, 국제사회의 압력을 이유로 할 수 없이 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특히 안전보장 면에서 그러하다. 걸프전 때의 국제공헌이나 PKO협력법안을 둘러싼 논의를 되돌아볼 필요도 없이, 특히 안전보장의 문제에 이르면, 갑자기 헌법이나 법제도를 구실로 삼아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협조의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려 한다. 어떤 나라보다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는 일본이, 안전보장을 국제공헌의 대상 분야에서 제외하는 것 등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점을 냉정하게 생각하여, 안전보장 면에서도 스스로의 책임이래 스스로에게 걸 맞는 공헌이 가능한, 체제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군국주의화, 군사대국화 등과 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또 하나의 요건은 풍부하고 안정된 국민생활을 구축키 위해 노력하고 있

는 국가들에 대해서, 또 지구환경보호와 같은 인류공통의 과제에 대해, 스스로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불충분한 점이 많기는 하나, 상당한 성과가 있기도 하다. 이 두 가지를 확실하고, 또 계속해 가는 것으로, 일본은, 국내의 경제적 발전과 재의 배분과 재화의 배분밖에 생각지 않았던 ‘片肺國家’로부터, 국제사회에서 통용하는 이른바 ‘普通의國家’로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³⁾

일본이 패전 후 50여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전후처리 과정에서 만들어진 ‘片肺的’이고 ‘半國家’적인 ‘비정상적’인 체제형식과 체제내용을 과감하게 극복하고 명실상부한 ‘정상적’이고 ‘보통적’인 정치체제로의 변신을 위한 노력이 바로 ‘보통국가’에 대한 목표로 구체화되어 있다. 그는 전후의 일본정치는 국민들이 움직여 모은 재산을 공평하게 국내에 배분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온 소위 ‘일본주식회사’를 통해 벌어들인 돈을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배당하는 것이 전후 정치의 모든 것이라고 봤다. 일본정치가 초기의 경제적인 파괴 상태를 벗어난 상황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경제 우선의 정치를 시종, 심지어 냉전이 끝난 상태에서도 그 자세를 변화 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普通國家’와는 거리가 먼 ‘片肺國家’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전후 일본정치의 파행성을 이렇게 진단한 오자와는 이러한 비정상적인 파행성을 극복하고 일본정치의 정상화 즉 ‘普通國家’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대국에 걸맞는 정치적인 영향력의 회복이 필요하며, 일본정치의 맹점인 권력의 나약성, 분산성을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리더십의 회복, 즉 정치개혁은 결국 수상이 명실상부하게 톱의 위치에 서서 정치를 리드해 가는 체제를 만드는데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수상의 권력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국민생활에 관계되는 분야를 과감하게 지방에 일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분권의 충실화, 다시 말해 ‘신분 권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⁴⁾

일본 전후총결산의 이상목표로 제시되고 있던 보통국가론은 그 후의 역대 정권에 의해서 지속적이고 일관된 최고의 국가목표로 견지되면서, 일본이 오랜 ‘戰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기의 새로운 일본의 구축을 위한 부동의 정치적 목표로 자리 잡아 왔다.

2013년에 펴낸 아베총리의 책 『새로운 국가로』(『新しい国へ』)(2006년에 간행된 『美しい国へ』)의 증보판)에서는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가 새로운 일본은 만들어 내는 대 전제로, 이를 통해서만 ‘일본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을 되찾는다는 것은, ‘전후의 역사로부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일본국민들 손으로 되돌리는 싸움’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3) 小澤一郎, 『日本改造計劃』(講談社, 1993), pp.103-105

4) 小澤一郎, 『普通國家論』(講談社, 1993), pp.40-43

그런데 여기서의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라는 것의 내용은 두 가지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일본의 전후민주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탈피이며, 구체적으로는 자위대의 국방군으로의 개편, 시민적자유와 제한으로부터의 탈피(비밀보호법안, 신헌법초안에서의 집회,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폐기)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후일본의 중심이 되어온 자주의 강화이며, 구체적으로는 대미관계의 일층강화 - 경제적으로는 TPP가입, 안전보장 면에서는 과거의 소련에 대신하여 중국을 일미동맹의 가상적국으로 고정시키는 것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추구(원자력발전의 재가동과 법인세 경감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후체제'라고 하는 것은 대미종속 이상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의 탈피라고 하는 것이 '대미종속의 강화'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논리모순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 '전후민주주의의 가치관'에 대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이 가진 지향성은 '전후의 발전적 승화'가 아니라, '잘못된 전전'으로의 회귀다. 이렇게 볼때 요컨대 아베총리의 '탈피'의 욕망은 전후보수가 늘 가져왔던 전전 긍정의 욕망과 자유민주주의라는 외피와의 모순을 해결치 못한 형태로 현재화되고 있다고 하는 한계를 원천적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⁵⁾

이렇듯 '전후로부터의 탈피'를 '보통국가화'의 다른 개념인 '강한 일본'의 창출을 통하여 만들어 내려고 하는 것이 아베정권 이념구조의 특성이다. 따라서 여기에 이르면 아베정권이 되찾으려 하는 국기는 첫째, 군사적으로는 무력을 가질 수도, 행사할 수도 있으며, 집단자위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전전의 제국주의 국가와 같은 내용의 국가체제이며, 경제적으로는 전후 일본을 일으켜 세운 이른바 '55년체제' 하의 고도경제성장기의 재현을 겨냥하고 있고, 이에 더해 전후체제에서 형해화된 천황제를 다시 부활시켜, 그동안의 '상징천황제'를 없애고 이를 실질적인 천황제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등을 중요한 내용으로 하는 '강한 일본'인 것이다.

■ '적극적평화주의'의 부상

아베정권의 정치이념구조에서 이상목표인 '강한 일본'을 만들어 내기 위한 현실목표로 강력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적극적평화주의'이다. 아베총리는 2014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적극적평화주의'를 '일본이 짊어져야 할 21세기의 간판'으로까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강한 일본' 을 되찾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단계다. 앞으로도 길고 험난한 도정을 긴장감을 가지고 헤쳐나 갈 각오를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하고 싶다. - 상호의존을 더해가는 세계에서,

5) 『白井聰, '安倍政権 "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は内戦をもたらす', 『2014年の論点100』(文藝春秋, 2014), pp. 88-89

내향적인 발상으로는, 이미 일본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일본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행한다. 이 '적극적평화주의' 자체가, 우리나라가 짊어져야 할 '21세기의 간판' 인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일본의 영토, 영해, 영공은 단고하게 지켜가야 하며, 그것을 위한 기반을 정비해 나가야 한다.)⁶⁾

아베총리에 의해 '일본이 짊어지고 가야 할 21세기의 간판'으로 자리매김 당한 '적극적평화주의'는 일본이 2013년12월17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만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외교, 방위정책의 기본방침인 국가전략(대전략)이 '국가안전보장전략'으로 내각에서 결정되면서 이 전략에 명시된 '기본이념'으로 공식화 된 개념이다.⁷⁾

〈한편, 현재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안전보장환경이 한층 어려움을 더해가고 있음과,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중대한 국가안전보장상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을 감안하면, 국제협조주의의 관점으로부터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결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나라 단독으로는 확보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도 또, 우리나라가 그 국력에 합당한 형태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층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우리나라는 금후의 안전보장환경이래서, 평화국가로서의 행보를 계속하여 견지하면서, 또 국제정치경제의 주요한 역할자로서 국제협조에 근거한 적극적평화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안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및 번영의 확보를 위해 지금까지 이상으로 적극적으로 기여해 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내걸어야 할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이다. - 국가가 그 유지와 발전을 지속함에 있어 이상으로서의 사회, 국가, 세계관이 정해져 있다. 정해진 이념을 짧게 한마디로 단순화한 것이 적극적평화주의다.)⁸⁾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서의 '적극적평화주의'는 변화된 국제환경(세력균형의 변화와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 대량파괴병기의 확산, 국제테러의 위협, 국제공공재의 관한 리스크, '인간의 안전보장에 관한 과제, 위협을 내포한 글로벌경제 등)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전력환경의 특성, 북한의 군사력 증강, 중국의 급속한 대두)라는 새로운 주변환경에 대응하는 일본의 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첫째,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그 존립을 확보키 위해 필요한 역지력을 강화하고,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미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만일 위협이 닥칠 경우에는 이것을

6) <http://www.47news.jp/CN/201312/CN2013123101001540.html>, 2014.1.5일 검색

7) <http://ja.wikipedia.org/wiki>, 2014.2.5일 검색

8) 国家安全保障戦略, 第II章1節

배제하고, 또 피해를 최소화하며, 둘째, 미일동맹의 강화, 역내외의 파트너로서의 신뢰, 협조관계의 강화, 실제적인 안전보장협력의 추진에 의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의 발생을 예방하고 삭감하는 것, 셋째, 부단한 외교노력이나 지속적인 인건공헌에 의해 보편적 가치나 룰에 근거한 국제질서의 강화, 분쟁의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행하고, 글로벌한 안전보장환경을 개선하여 평화롭고 안전되고 번영하는 국제사회를 구축하는 것 등과 같은 제반 국가안전보장의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고 주장한다.⁹⁾

그러나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까지 위치지워진 '적극적평화주의'가 내세우고 있는 위에서와 같은 명목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정치적 의미는 별도로 파악되지 않으면 안된다. 일본이 적극적평화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우선, 이는 '소극적평화주의'에 대한 대안개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전후 일본에서는 상당기간 평화주의에 입각한 평화체제가 수립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전후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평화주의는 어디까지나 2차대전에서의 일본의 패배와 그로 인해 타의에 의해 '피동적'으로 형성된 징벌적인 평화체제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징벌적 체제아래서는 독자적인 군사력도 가질 수 없었고, 전쟁을 할 수도 없었으며, 또 명치유신 이래 꾸준히 이어온 일본 고유의 천황제도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반쪽짜리의 국가 즉 '半國家' 상태였다는 것이다.¹⁰⁾

때문에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일본은 과거의 '피동적'인 체제로서의 평화체제를 극복하고 새롭고 정상적인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평화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국제상황 속에서 일본이 제대로의 역할을 찾아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며, 이의 구체적인 예가 최근 일본이 전개하고 있는 '평화우산' 속에 안주

한 일본에서 평화우산을 만드는 일본,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한 노력이다.

둘째로, 적극적평화주의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타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대외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일본은 그동안 신자유주의의 세계적인 경제 환경과 더불어 장기화하는 디플레이션과 되풀



9) 国家安全保障戦略, 第Ⅱ장Ⅱ節

10) 伊部英男, 『半國家-日本』(ミネルヴァ書房, 1993) 참조

이되는 경제정책 혼란의 결과 격차사회가 구조화됨은 물론 임금 또한 늘어나지 않고있는 데프레이션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타개책으로 추진되는 아베노믹스는 그 중심적 내용의 하나로 제기된 것이 바로 『瑞穂の国の資本主義』¹¹⁾이다. 이는 아베총리가 2013년 4월 18일에 있는 제8회 '경제 재정자문회의'에서 행한 '지속적성장을 실현할 시장경제시스템 구축'에 대해 행한 연설에서 제시된 지속적 성장을 위한 대안이다. 그는 여기서 '일본형 시장주의'의 룰을 개발하고 이를 통한 세계시장으로의 활발한 진출이 바로 일본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시장경제시스템의 대전제라고 주장한다.

(아베정권에서는 목적과 수단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왜 강한 경제를 만드는가 하면, 일본에서 태어난 것에 기쁨을 느끼고, 일본인 모두가 풍요함을 느끼고,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난 기쁨과 함께 자랑을 가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일본은 고래로 아침일찍 일어나 땀을 흘리고, 모두가 다같이 밭을 갈고, 물을 나눠사용하면서, 가을이 되면 황실과 함께 오곡풍성을 모두가 기도해 왔던 나라이며, 누가 병이나서 어려워지더라도 하면 쌀을 가져가서 서로 도와온 나라, 그것이 '瑞穂의 나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은 TPP에 참가하고, 더욱 글로벌 경제, 사회 속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사회 경제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가능성을 가져다 줌과 동시에 '황폐한 흔' 도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뛰어난 글로벌경제, 사회로 만들어 가는 것인가 하는 것은, 룰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룰 만들기에 있어서도 일본은 발산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글로벌한 경제, 사회 속에 매몰되어버릴지도 모르는, 아름다운 일본의 국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에게 공통하는 것은 역시 철학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열린 시장을 중시하면서도, 도의를 존중하고, 진정한 풍성함을 안다고 하는 그 일본다운 시장주의, 그리고 자본주의의 양태를 추구하는 것은 세계의 룰이 되어갑니다. 우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함께, 룰에 대해서도 세계를 향해 발산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¹²⁾

이렇듯 아베정권이 말하는 일본에서의 경제회복의 길은 바로 일본적인 내용을 가진 시장주의의 개혁과 이를 통한 일본경제의 세계적인 확대로 봤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경제의 회생을 위한 일본적 시장주의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자적이고 적극적인 대외관계를 개혁해 갈 적극적평화주의라는 새로운 대외정책의 패러다임 구축이 선결적인 과제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11) '瑞穂の国'이라는 것은 '일본서기'에 나오는 말로, 쌀이 많이 나는 나라라는 의미다. 이는 가끔 일본에 대한 별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12) http://www.kantei.go.jp/jp/96_abe/actions/201304/18zaiseisimon.html. 검색일 2014.2.5일

또 한 가지 적극적평화주의를 통해서 만들어 내려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세계의 중심 국가로서의 위치 확보에 있다. 전후체제를 극복하고 하나의 명실상부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로서의 '보통국가 일본'의 회복에 더해, 아베정권은 적극적평화주의를 통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제반 영역에서 '강한 일본'을 만들어내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세계의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의 자리를 회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최근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것이 바로, 집단자위권 행사,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노력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제반사항들을 고려하면 결국 적극적자유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한마디로 '전후체제 극복'에 있다고 단순화 할 수 있다. 일본이 전후질서를 구성해 왔던, 헌법체계, 안보체계, 상징권 황제 등의 체제형식과 체제내용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패전이전의 일본의 모습으로 이를 되돌리려는데 그 목적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전후를 극복한 '정상화', '보통화', '강력화'로의 회귀를 위한 가장 분명한 정책대안이 바로 과거의 '주어진 평화체제'가 아닌 '적극적인 평화체제'의 회복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 적극적평화주의의 실천전략

아베정권이 나타내 보이고 있는 '강한 일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중간목표인 '적극적평화주의'를 현실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실천전략들은 정치, 외교, 국방, 경제 등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 실천전략 들 중에서 크게 중요성을 가지는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려 한다.

■ 헌법개정(해석개헌)

아베정권이 적극적평화주의를 통해 달성코자 하는 강한 일본 만들기 위한 첫 번째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행 헌법의 개정(혹은 해석개헌)이다.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쟁포기 등을 비롯한 보통국가 내지는 정상국가로의 이행의 장애요인들을 제거하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후체제로부터 탈피한 '정상적인' '강한 일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현행 헌법 제2장 '전쟁포기'¹³⁾의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력사용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전권

13) 9조 (1) 日本國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

포기 등의 조항들을 개정하는 것이 일본의 전후총결산의 중심적인 내용이며, 이들 제한 조항들을 비롯한 미 점령군사령부에서 급조하여 패전국 일본에 강요한 헌법 개정의 바로 일본의 정상화 내지는 강한 일본의 구축의 대 전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14년 새해 첫날부터 아베총리는 전후 68년간 일본을 유지해 온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자위권을 회복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1월1일 발표한 ‘연두소감’을 통해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헌법도 제정 68년을 맞은 올해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을 향한 국민적인 논의를 한층 더 깊게 해나가야 한다”고 개헌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쇼와(昭和)26년(1951년)에 체결된(일본과 연합군이 맺은 제2차대전 강화조약인) 산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일안보조약으로부터 전후 일본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이어 올해가 일본 연호로 ‘헤이세이(平成)26년’이라는 점을 들어 “올해가(당시와 연도가 겹치는) 헤이세이 26년인 만큼 일본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향해(개헌이라는) 새로운 큰 걸음을 내딛을 때”라고 개헌을 통해 점령군사령부가 만든 일본의 전후질서를 탈피하자고 했다.

아베의 헌법개정에 대한 열의는 개헌을 평생의 과업으로 여겼던 그의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뜻을 이어 오랫동안 키워왔다. 그가 2006년에 펴낸 <아름다운 나라>에서 현행 헌법은 “미국이 자신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두 번 다시 일본이 서구 중심의 질서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강한 의지를 갖고 만든 것”이라며 “초안은 당시 연합군최고사령부(GHQ) 스태프들에 의해 열흘 남짓의 짧은 시간에 작성된 것”이라고 지적, 현행 헌법이 전후 승전국인 미국이 일본에 강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개헌에의 노력들은 결국 자민당이 2012년 4월, 현행 헌법에서는 상징적인 존재로만 위치지워져 있는 일왕을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다시 추대하고 그 밖에도 가장 정상화의 장애조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제9조를 개정하는 것을 중심 내용으로 한 헌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안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개헌 정족수(중·참 양원에서 의석의 3분의 2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베 정권이 일단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을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개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해석개헌’¹⁴⁾에 집중하고, 개헌은 이후 과제로 미뤄 왔으나, 새해 들어서엔 정초부터 다시 개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다듬고 있다.¹⁵⁾

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2)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14)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문의 해석만을 바꾸는 것으로 사실상 규정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변경이 일어나는 것. 변경된 해석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게 된 경우를 헌법의 변천이라고 한다. <http://kotobank.jp/word/2014,2,7>일 검색

15) <도쿄신문>은 1일 “올해는 평화헌법의 기로가 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관련 일정을 소개했다.

■ 有事法令 제정

집단적자위권 확보의 방법으로는 헌법9조 등을 고치는 명문개헌과, 헌법해석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을 행하는 해석개헌의 두 가지 방법 이외에도 아베정권은 有事事態에 대비한 각종 법이나 전략, 강령 등의 제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베정권은 '특정비밀보호법'(2013/12/15), '신방위대강'과, '국가안전보장전략'(2013/12/17)등의 일련의 유사관련법을 성립시키고, 이어서 이들 유사법의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는 '國家安全保障基本法'의 확정을 위해 치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特定秘密保護法〉; 유사법제의 제정 시리즈 중 가장먼저 성립된 '특정비밀보호법'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한 정보 가운데 '특히 비밀이 필요한 것'을 '특정비밀'로 지정, 취급자의 적정한 평가의 실시나 누설했을 경우의 벌칙 등을 정한 법률로 이것에 의해 비밀의 '누설 방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와 국민의 안전의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취지로 정해진 법률이다.

일본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이 법제정의 이유로 들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10년10월의 경시청공안부의 테러대책에 관한 비밀자료가 경찰관이나 감시대상자 개인정보까지 포함되어 대량으로 유출한 것을 빌미로 공안경찰의 다양한 비밀활동을 숨기려 하고 있으며, 외적요인으로는 2007년8월에 체결된 '일미군사정보 포괄보호협정'(GSOMIA)에 따라 일미가 정보교환을 원활화하게 하고, 장비계획이나 운용정보 등을 공유하는데 있어 정보보호의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그러나 이 법은 '특정비밀'에 관한 분명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남용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특정비밀의 영역이 방위, 외교, '특정유해활동'의 방지, 테러리즘 방지에 관한 사항 등 4개의 정보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기타'라는 문구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활동이 '유해활동'으로 여겨질 수도, 더러는 정권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은 진실이 쉽게 '비밀'로 지정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처벌범위가 너무나 광범위 하다는 점이다. 과실도 처벌대상이며, 교사, 선동도 독립적으로 처벌된다. 또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

올 초엔 지난달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면서 마무리 짓지 못한 '무기수출 3원칙'에 대한 재정비가 이뤄진다. 이후 4월께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위한 전문가 모임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가 완성되면, 여름께 이 내용을 뼈대로 한 헌법 해석변경이 이뤄진다. 이후 가을 임시국회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위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이 예정돼 있고, 12월 말까지 그에 따른 미-일 양국의 작전 범위와 역할 분담을 정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고쳐 전체 내용을 최종 승인하게 된다. 『東京新聞』, 2014. 1. 1일자

이 아니면 취재의 자유도 인정은 하고 있으나, '부당한 방법'의 인정은 당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인한 미디어 활동의 위축효과는 피하기 어렵다.

그 밖에도 비밀지정의 무기한화의 가능성이다. 비밀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이나, 이어서 또 5년의 연장이 가능하며, 더욱 30년 이상이 될 경우에 내각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각이 공개를 승인하지 않으면, 특정사항은 언제까지라도 비밀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다.¹⁶⁾

〈國家安全保障戰略〉; 아베정권이 국제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키 위한 '적극적평화주의'의 기본방침으로 2013년 12월 17일 각의를 통과시킨 종합적인 방위전략이 '국가 안전보장전략'이다.

이는 북한정세의 변화, 중국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위협과 군사력 팽창 등의 새로운 주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일본이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분명히 한 대외정책 지침이다. 즉 평화헌법을 기치로 내걸며 전쟁과 무기의 보유와 사용에서 손발을 묶었던 전후 질서에서 벗어나 집단적자위권의 공공연한 행사를 통해 전쟁도 가능한 '정상국가', '보통국가', '강한 국가'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외에 알린 선언서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전략에서는 전후 일본 사회의 상징인 '평화주의'를 바로 송두리째 없앴다간 국내의 의 강한 반발이 일게 뻔 한 만큼 이를 희석하고 속도 조절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란 그럴싸한 표현으로 포장하여 그 속내를 숨기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 전략에서는 1967년 이후 일본 내에서 사실상 무기수출 금지 규정으로 작용해온 '무기 수출 3원칙'에 대해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명확한 원칙을 정한다"며 수정할 뜻을 명확히 함으로써 이 한계마저 폐기하려 한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당시 총리가 천명한 무기 수출 3원칙은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의 수출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이 원칙은 명문으로 법제화는 되지는 않았지만 역대 정권에 걸쳐 충실하게 지켜왔던 원칙이었으나, 아베정권에는 이를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했으나 사실상 전면 폐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新防衛大綱〉; 아베정권의 '적극적평화주의'를 통한 '강한 일본' 구상은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같은 날 각의를 통과한 '신방위대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10년후까지를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이나 방위력의 규모를 정한 지침이다. 그리고 이것

16) http://www.yomiuri.co.jp/adv/wol/opinion/gover-eco_131111.htm, 검색일 201402.10

을 기준으로 5년까지의 구체적인 정책이나 장비조달량을 정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정해진 다. 이는 정세변화가 생길 경우는 그 상황에 따라 개정되기도 하나, 또 필요가 없으면 10년이 지나서도 개정되지 않을 경우도 있다.

2014년 이후에 관한 방위계획의 대강은 平成25년(2013년)에 개정되었다해서 '25大綱' 부르며, 이는 북한에서의 지도자교체와 그에 수반된 정세변화, 중국의 해양진출과 그에 따른 긴장의 증대, 특히 2013년11월23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권의 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주변정세 변화에 대응키 위해 새롭게 만들어졌다.

여기서는 일본 일국 뿐 아니라 주변 여러 나라들과의 군사, 비군사분야를 불문한 연대, 협조를 보다 강력히 추진하려 했다. 국제협조주의에 근거를 두고, 적극적평화주의 아래 종래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안전보장체제를 구축, 적극적인 국제평화활동, 평소부터 높은 질과 양을 수반한 적응성과 능력을 정비하면서 특히 일미동맹의 강화를 도모하려 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안전보장협력을 추진, 새로운 구조에 의한 다국간의 상호연대를 강조하고, 국제협력체제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상대, EU, NATO, OSCE 및 영국 및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제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을 분명히 한다.

또 '25대강'에서는 1995년 이후 20년 가까이 유지하던 '절도 있는 방위력 정비'란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실효성 높은 통합적 방위력 정비'로 바꾸면서 "방위력의 '질' 및 '양'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해 억지력과 대처력을 높여 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2010년 민주당 정권 시절에 만들었던 방위대강에 비해 육상자위대의 정원이 5000명 늘어난 15만9000명으로 증원 됐다. 2014년도부터 향후 5년간 방위비 총액도 지난 5년간 보다 1조2000억 엔 늘어난 24조6700억 엔(약 252조원)으로 부풀었다. 이러한 조치는 대규모 재정적자에 시달리며 부처마다 예산이 무자비하게 깎이는 상황 속에서도 방위비만큼은 늘려 가겠다는 아베 총리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다.

〈國家安全保障基本法 제정 노력〉; 그 제정을 위해 면밀하게 준비 중에 있는 국가안전보장기본법은 아베정권에 있어 궁극적으로 단행코자 하는 현행 평화헌법 개정에 버금가는 적극적평화주의 실천을 위한 가장 중요한 법안이다. 아베정권은 적극적평화주의를 통해 이룩하려고 하는 집단적자위권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 그동안 현행 헌법9조를 개정하는 명문개헌과, 기존의 확립되어있던 헌법조문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고치는 이른바 '해석개헌'으로 실질적인 헌법개정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내려는 헌법해석 변경이라는 두 가지의 방법을 동시에 추진해 왔다.

아베정권은 헌법개정 내지는 해석개헌에 대한 노력과 동시에 앞에서 살핀바와 같은 다양한

유사법제의 입법을 통해서 집단적자위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위한 임시적이면서도 유효한 법률적인 기반을 만들어 오고 있었는데, 그러한 노력의 최종적인 목표가 바로 지금 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국가안전기본법’의 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자민당이 개헌안 공포 후인 2012년7월에 이미 확정해 놓은 ‘국가안전보호기본법’은 집단적자위권행사의 절차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 법의 제정은 ‘하위법에 의한 하극상 쿠데타’의 완성형으로서, 만약 이 법이 성립되면 이는 현행 헌법 제9조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¹⁷⁾

이 법은 제10조에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발생한 사태’에서, 유엔안보리에의 보고, ‘그 나라에 대한 공격이 우리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는 관계성’의 인정, 당해국으로부터의 지원요청 등을 요건으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한다(집단지위사태)라고 못 박고 있다. 또 11조에서는 유엔집단안전보장의 특히 다국적군의 무력행사에의 참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법률의 입법 의도는 앞서 자민당이 이미 확정해 놓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밀기본법,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의 관련법제와 함께 이를 통한 집단적자위권의 행사와 이를 통한 전후체제로부터의 탈피가 그 주된 목적임은 분명하다.

■ 야스쿠니신사(靖國神社) 참배

아베총리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가 2006년 8월 참배한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2월 26일에 현직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일본 총리가 2차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다는 것은 일본의 전쟁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東京裁判’¹⁸⁾을 부정할 뿐 아니라 이는 현행 일본의 헌법, 즉 평화헌법을 부정하는 도전행위다. 특히 아베총리의 참배는 이에서 한걸음 더 나가 그의 정치적 목적인 ‘강한 일본’을 만들어 내기 위한 실천목표인 적극적평화주의의 구현을 위한 또 하나의 적극적인 정치행위로서의 의미도 가진다.

먼저, 야스쿠니신사의 참배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전쟁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정치적 행

17) <http://www5.sdp.or.jp/publicity/shimpo/opinion/130508.htm>

18) 정식명칭은 ‘極東國際軍事裁判, The International Military Tribunal for the Far East’이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항복한 후인 1946년5월3일부터 1948년11월12일까지 열렸다. 연합국이 ‘전쟁범죄인’으로 지명된 일본의 지도자들을 재판한 일심제 재판으로 간단히 ‘東京裁判’으로 부른다. 이 재판은 연합국에 의해 동경에 설치된 극동국제군사법정으로, 東條英機 전 일본수상을 비롯한 일본의 지도자 28명을, 「평화에호제국민의 이익 및 일본국민자신의 이익을 훼손」한 「침략전쟁」을 일으킨 「공동모의」를 「1928년1월1일부터 1945년9월2일」에 걸쳐 행했다고, 평화에 대한 죄(A급범죄), 인도에 대한 죄(C급범죄) 및 통상의 전쟁범죄(B급범죄)의 등으로 재판했다. 재판중에 병사한 2명과 병으로 면소된 1명을 제외한 2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그 가운데 7명은 사형되었는데, 이들을 일반적으로 「A급전범」으로 부른다.

위다. 이 전쟁은 일본이 먼저 도발한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일부에서는 오래전부터 전쟁발발의 책임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구미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으로 돌리려 했으며, 아베총리의 신사참배 역시 이러한 일본 피해자론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전쟁책임을 타국으로 돌리려는 저의를 표출하는 행태다.



둘째, 야스쿠니신사는 전쟁을 주도한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는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총리가 공식적으로 참배한다는 것은 결국 ‘A급전범’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는 것이며, 이는 결국 그들에게 ‘A급전범’의 낙인을 찍은 ‘동경재판’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일 수 밖에 없다.

일본의 우익들은 전후 지속적으로 동경재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이것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해오던 터다. 아베정권은 동경재판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그동안의 우익들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공식참배를 통해 이를 한층 더 강조하려 한 것이다.

동경재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 재판이 ‘平和에 대한 罪’, ‘人道에 대한 罪’ 등 종전까지 국제재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죄목을 적용한 의도적인 재판이라는 점¹⁹⁾, 그리고 또 동경재판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과 객관적인 법리에 따라 진행된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부공정한 재판, 즉 승리한 측에 의해 왜곡된 ‘승자의 재판’이라는 것²⁰⁾ 등을 거론하면서 동경재판의 정당성을 부정해 왔다. 아베총리가 2월12일 태평양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에게 극동군사재판소가 부과한 형벌은 “(일본) 국내법을 토대로 내려진 형(刑)은 아니다”며 재판에 대한 ‘이견’을 우회적으로 표명²¹⁾한 것은 바로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은 일본인 전범들이 ‘일본 국내법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다’는 우익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으로 이는 그의 동경재판에 대한 강한 저항의식이 그 뿌리에 있다.

19) 高橋哲哉 『戦後責任論』講談社, 2005), p.135

20) 牛村圭 『「勝者の裁き」に向きあって——東京裁判をよみなおす』(ちくま新書, 2004년

21) 중앙일보, 2014.02.12 19:21

4. 결

위에서 아베정권의 '새나라 만들기' 프로그램이 가지는 이념지향성을 살피면서 다음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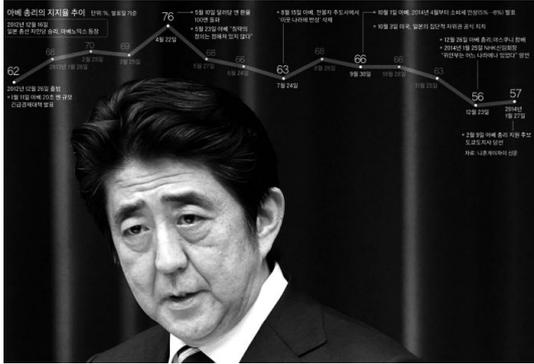
먼저, 아베정권은 그동안 일본의 전후 보수세력들이 추진해오던 '전후체제의 극복'이라는 다소 애매했던 정치적 목표를 '강한 일본 만들기'라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단순화시킴으로서 전후 처리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강한 일본'을 새나라 만들기의 '간판'으로 내세움으로써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청산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주역으로 재 탄생하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둘째, 아베정권이 '강한 일본'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실천목표로 설정한 '적극적평화주의'는 일본이 전후의 처리과정에서 전승국들에 의해 만들어진 '비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시켜온 '소극적 평화주의'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국가체제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평화주의가 전후처리과정에서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비롯한 '전후체제' 전반을 부정하고 이에 대처할 새로운 체제형식과 내용을 만들어 전쟁패배 이전의 일본으로 회귀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평화주의'의 경계를 넘어선 제국주의 내지는 군국주의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셋째, '새나라 만들기'의 구체적인 목적은 현행 평화헌법의 개정이며, 그리고 이 헌법개정을 통해서 집단적자위권의 확보와 천황제의 부활을 이루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專守防衛'²²⁾만을 허용받아 왔으나 이제와서는 이 원칙의 근원이 되어왔던 헌법 제9조를 폐기하는 개헌을 통해 명실상부한 독자적인 무력사용권 내지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또한 현행헌법에서는 천황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 또한 헌법개정을 통해서 천황을 '국가원수'의 자리로 되돌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아베 자민당정권은 헌법개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천황제와 군사력이 부활된 천황제군국주의의 복원을 겨냥하고 있다는 의심 또한 피할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일본은 자기들이 세계에서 유일한 핵폭탄의 피폭국가이며, 또 자기들의 의

22) 專守防衛란 제2차대전 후 일본에게 부여된 군사전략 원칙으로, 방위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상대국에 선제 공격을 행하지 않고, 침공해온 적을 자국영역에서 군사력을 가지고 격퇴하는 방침을 말한다. 즉 전반적인 작전에서 상대의 공격을 받고서야 비로서 군사력을 행사하는 것, 그 정도는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며, 상대방의 근거지에서의 공격을 하지 않으며, 자국영토 또는 그 주변에서만 작전할 수 있는 방위의 원칙이다. 이는 전력을 가지지않고 교전권 부인을 규정한 일본헌법 제9조에 따른 수동적인 군사전략이다.



아베총리의 지지도 추이

지와 상관없이 강요된 평화헌법이라는 굴레속에서 국가적인 독립성과 자주성이 결여된 '반쪽국가'의 상태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정상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새나라 만들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이같은 '새나라 만들기' 프로그램은 시종일관 일본이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자임을 은폐하고 오히려 그들이 전쟁의 피해자임을 내세우는 역사왜곡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또 그들이 새나라 만들기를 통해서 새롭게 구축해 내려는 체제가 태평양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수행해가던 '제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 이상일 수 없다는 점 등이 바로 아베정권의 '새나라 만들기' 이념구도의 정확한 실체이자 가장 분명한 한계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Ideological Directivity of Abe Regime and 'Positive Pacifism'

Jung Nam Cho
(Korea University)

Key words

Japan, Abe Sinjo, Normalization, Ideological structure of Japanese politics, positive pacifism

The subject of this thesis is the analysis of ideological structure of Japan which incumbent prime minister, Abe Sinjo(安倍晋三) has professed. The paper also analyzed the directivity and implication of ideological structure. Thorough which, we can clearly understand the change of the historical course of ideology in Japan and disclose the present meaning.

The current Japanese foreign and domestic policies seem to be extremely radical, and this bias is unprecedented. We must analyze the ideological directivity and meaning to understand the nature of Japanese political behavior. Japan is trying to make 'normalization' of 'the erroneous past.' Normalization of past is the cause and rationalization of the present policies. The Japanese policies need to be justified in the perspective of ideological relevance. This is the reason why the paper probes the ideological structure of Japanese politics.